

반려동물보건학과운영규정

2025.06.19. 제정

<반려동물대학>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반려동물보건학과(이하 “학과”라 한다)의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목적) 반려동물보건학과(이하 ‘본 과’라 한다.)는 대학의 교육목표와 연계하고 동물보건사(농림축산식품부, 대한수의사회,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,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등)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반영하여 동물보건학 및 수의학의 발전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와 동물보건사로서 갖추어야 할 생명존중의 소양과 반려동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학과운영

제3조(전임교원) ① 전임교원은 본 학과의 학생지도, 교육, 연구 및 동물보건 관련 분야의 봉사에 임한다.

② 학과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생을 분담하며, 지도학생의 대학생활, 학사, 학과적응, 취업, 진로 등에 관한 지도를 시행한다.

③ 수의사 면허를 가진 전임교원은 인증평가 운영(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등)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.

제4조(학과장) ① 학과장은 본 학과 운영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하며,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의 운영 및 학과운영 전반에 대한 회의 소집 및 의결권을 가진다.

② 본 학과의 학과장은 반려동물보건학과 소속 전임교원 중 조교수 이상으로 하며, 총장이 임명한다.

제5조(학과 운영위원회) ① 학과 운영위원회는 인증평가에 대한 지원과 학과 운영 등에 대한 자문 등의 학과 전반적 운영사항을 논의하며 구체적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과의 제 규정 제정 및 개정
2.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대응 계획 수립
3. 학과 각 위원회 구성
4. 학과 예산편성
5.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
6. 학생지도 및 학과운영의 기타사항 논의

②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하며, 구성은 전임교원 전체로 한다. 필요에 따라 초빙교원, 겸임교원, 강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.

③ 의결사안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며 찬반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학과 위원회) ① 학과는 학과 운영 및 인증평가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, 필요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학과 교육과정운영위원회

가. 구성: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하며, 위원은 학과 소속 전임교원 및 산업체 위원, 재학생 대표, 졸업생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

나. 기능: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과의 교육목표, 교육과정 설정 및 개정, 단·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검토 등의 모든 제반사항뿐만 아니라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교육 목표 설정과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체계 수립, 학습 최종 성과 평가 및 결과 분석, 주기적 질 개선계획 수립 및 분석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한다.

2.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관리위원회(평가관리위원회)

가. 구성: 위원장은 학과 운영위원회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한 자로 하며, 구성은 전임교원 전체로 한다.

나. 기능: 인증평가 교육 목표 달성 평가, 최종성과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, 동물보건 교육 인증 자체평가 등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.

② 의결사안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며 찬반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7조(조교) 본 대학 조교임용규정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보건학과 내 조교를 두며, 역할 및 기타 관련 사항은 본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장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운영

제8조(인증평가) 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(이하 ‘인증평가’라 한다.)는 상기 기관이 운영하는 동물보건사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시행하는 양성기관(대학)에 대한 인증평가를 말한다.

제9조(인증평가 책임자) ① 인증평가 책임자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관리위원장으로 하며, 자격은 수의사 면허를 가진 전임교원으로 한다.

②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책임자는 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정한다.

③ 인증평가 책임자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의 운영(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, 인증평가의 조직, 관리, 지속적 검토, 기획, 개발 등)을 담당하며,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한다.

④ 인증평가 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.

1. 동물보건사 양성에 대한 교과과정 편성을 요청하고 편성된 결과에 따라 운영하는 권한을 갖는다.
2. 동물보건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시설과 관련하여 학과에 배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.
3. 인증평가의 조직, 관리, 지속적 검토, 기획,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.
4.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학과 운영위원회를 통해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.
5. 인증평가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한다.
6. 인증평가에서 사용하는 교내 교육시설 및 설비, 기자재의 관리 및 지원을 정기적(년 1회

이상)으로 확인한다.

- 제10조(인증평가 운영)** 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편람의 내용과 인증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을 인증평가 실시 전에 신속히 반영하여 인증평가를 대비한다.
- ② 인증평가 운영을 위한 행정 조직 및 의사결정 체계, 재정 지원 등은 본 대학 규정에 의거하며, 학과 교수는 의사결정체계에 참여한다.
- ③ 학과 운영 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 대학편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 하지만, 불가피한 사유로 준수가 불가능할 경우 학과 운영위원회를 통해 내부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 이 경우도 인증평가 해당영역에 부적격(탈락) 사유가 발생할 만큼 기준을 변경할 수는 없다.
- ④ 교육목적 및 목표, 교육과정 및 이수체계, 최종성과는 본 과 홈페이지,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 등에 공개한다.
- ⑤ 인증평가를 위해 현장실습을 실시하며 세부내용은 본 대학 현장실습 운영 지침을 따른다.
- ⑥ 전임교수는 인증평가 운영에 필수적인 대외 협의체(한국동물보건사 대학교육협회 등)에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가입비와 연회비는 전액 대학에서 부담하며, 인증평가편람을 준수한다.
- ⑦ 기타 인증평가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 4 장 학사운영

제11조(학사운영) 본 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사를 운영한다.

1. 본 학과의 『수업연한』, 『학사일정』, 『재입학, 휴학 및 복학, 편입』, 『전과 관리』, 『학년수료 및 학사경고』, 『자퇴, 유급』, 『등록 및 수강』, 『졸업 및 수료』, 『출석』, 『성적 및 시험』, 『특별학점』, 『계절학기』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본 대학의 규정에 따른다.
2. 본 학과의 임상실습에 관한 제반 사항은 반려동물보건학과 현장실습 운영은 별도 현장실습 지침서에 따른다.

제12조(졸업) 본 학과의 졸업학점 및 졸업자격은 본 대학의 학칙에 의거한다.

제 5 장 학생지도

제13조(지도교수) 학생의 학업, 진로, 취업, 생활지도 등 포괄적인 학생 상담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두며, 지도교수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과의 지도교수는 매년 초 반려동물보건학과 운영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.
2. 지도교수는 수시로 면담을 가지며, 학기별 최소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여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학문적 성장을 위해 지도한다.

제14조(반려동물보건학과 학생회) ① 학교생활을 통하여 자율성과 지도력을 배양하기 위해 반려동물보건학과 내 학생회를 둔다.

② 반려동물보건학과 학생회의 자격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반려동물보건학과 학생은 반려동물보건학과에 등록함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고 제적, 또는 자퇴 및 휴학,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동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2. 학생회에 소속된 학생은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.

제15조(동아리) ①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취미, 소질, 전문성, 봉사정신을 높여 건전하고 보람찬 대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학과 내 동아리를 둔다.

② 반려동물보건학과 동아리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동아리 활동은 각 동아리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운영한다.
 2. 동아리 활동은 각 동아리 회장과 회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, 동아리 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.
 3. 기타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은 학생단체 활동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- ③ 동아리 활동은 반려동물보건학과 교육목적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